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726호  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17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 |
| 제출연월일 | 2017년 10월 31일 |

#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2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7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제41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('17.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“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” 민간위탁 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

나. 추진 계획

- 수탁기간 : 2018. 1. 1. ~ 2020. 12. 31.(3년)
- 수탁기관 : 한국장애인개발원(보건복지부 권고기관)
  - ※ 발달장애 관련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
- 수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- 사업비 : 488백만원(국비50%, 도비50%) \*연도별 변동 가능
- 위탁주요사무
  -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  -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
  -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  -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

## 3. 참고사항

-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

#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



보건복지국  
노인장애인과

#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('17.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,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익옹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
- 민간위탁(3년),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-

## I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, 제41조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(위탁기간)

## II 위탁개요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층
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2018. 1. 1. ~ 2020. 12. 31.(3년)
- 수탁기관 : 한국장애인개발원(보건복지부 권고기관)  
※ 발달장애 관련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- 사 업 비 : 488백만원(국비50%, 도비50%) \*연도별 변동 가능
- 위탁사무
  -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  -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
  -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
-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
-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등

### Ⅲ 추진체계 및 절차

|       |  |            |
|-------|--|------------|
| ①추진계획 | • 추진계획 수립  | '17. 10월   |
| ②의회동의 | • 민간위탁 의회동의(11월 회기중)<br>* 동의안 '붙임' 참조  | '17. 11월   |
| ③수탁방법 | • 수탁기관 선정<br>- 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<br>- 자격 :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 제 4조에 따른 공공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7. 11월   |
| ④수탁심사 | 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<br>- 구성 : 6~9명 정도<br>- 심사 :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등<br>- 결정 : 공개모집(고득점자 선정)<br>재계약(사업실적, 운영효율성 등 고려) | '17. 11월   |
| ⑤협약공증 | • 협약체결 및 공증  | '17. 12월   |
| ⑥사무개시 | • 위.수탁 사무개시  | '18. 1. 1. |

### Ⅳ 세부 추진계획

#### ① 수탁기관 선정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
- 위탁기간 동안 사업실적, 운영성과 등 고려 수탁기관선정 심의 위원회 심의·결정

## ○ 위탁조건

- 사업의 범위는 「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」 운영
- 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- 위탁시설의 용도를 임의 변경 사용 금지
- 위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등

##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

- 심의대상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- 개최시기 : '17. 11월 \*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준용
  - 구성인원 : 6~9명 이내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   - 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  - 심사항목 : 사업실적, 사업수행능력,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등
- 계획설명 :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(공개모집 또는 재계약)
- 수탁자 선정 : 사업실적, 운영성과 등 고려 선정

## ③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시기 : '17. 12월
- 내 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

## V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7. 11월
-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17. 11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17. 12월
- 위·수탁사무 개시 : '18. 1. 1.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② 시·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41조(위임·위탁)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**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약체결등)**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·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

**제3조(수탁기관 선정절차)**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탁사무 해당부서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**제4조(자격제한)**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5조(협약의 체결 등)**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·수탁협약의 체결,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마친 때에는 위·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·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-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·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위·수탁협약서에는 위·수탁기간, 예산지원과 정산, 수입금의 처리, 협약의 해지, 대상 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, 민·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
**제6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**

-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, 업무주관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
**□ ‘1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계획(보건복지부 지침)**

**○ 지역센터 위탁(p2)**

- 설치주체 : 광역지자체장
  - 설치기준 : ‘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위탁
  - 수탁 권고기관 : 한국장애인개발원
- 광주/대구 모의적용사업을 위탁 수행하여 지역센터 기능, 운영 전반에 이해도가 높으며, 중앙센터 운영주체로서 지역센터 총괄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

**○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요사업(p3)**

- 정보과약 : 발달장애인 특성·지리적 분포,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, 공공후견인 등 관련 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센터에 보고
- 평가 : 관할 지역내 전담 경찰 지정(법 제13조), 평생교육기관 지정(법 제26조), 문화·예술 지원시책 수립(법 제27조) 여부 등 점검·평가
- 지원 : 발달장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 담당 직원, 전담 검사·경찰 교육, 공공후견인 선임·감독 등 관계 기관, 기초지자체 지원